

##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 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0조 제5항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를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항에”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3 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법 제2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보전 요청 신청 및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검토한 후,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등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 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 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신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긴급 전자

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전요청,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신청 또는 건의를 받고,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 보전요청 신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⑤ 검사가 법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 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 제321조 제1항에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
  -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 별지 제1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000검찰청</b>	
진행번호 : 202XX보전XX호 <span style="float: right;">0000. 00. 00.</span>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발 신 : 000검찰청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검 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형제XXXX호 / 20XX임시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b>별지1 기재와 같음 /</b>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b>별지2 기재와 같음 /</b>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로부터 XX일(6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비 고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b>000검찰청</b>									
진행번호: 202X보전XX호									
수 신 : △△△지방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span style="float: right;">㉠</span>									
피 의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민 등 록 번 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 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거</td> <td></td> </tr> </table>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허가를 청구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	<b>별지1 기재와 같음 /</b>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집행일로부터 xx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b>별지2 기재와 같음 /</b>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000(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b>○○○검찰청</b>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b>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b>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승인
			불승인
			비 고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보전요청 일 시			
긴급 보전요청한 전 자 정 보 범 죄 사 실 및 긴급 보전요청 사 유			
긴급 보전요청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b>검 사 결 정</b>			
○○○ 검찰청			
검 사			인

<b>○○○검찰청</b>			
제 0000-0000 호			
수 신 : ○○○(기관명)			
제 목 : <b>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위에 대한 지휘</b>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건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승인
			불승인
			비 고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보전요청 일 시			
긴급 보전요청한 전 자 정 보 범 죄 사 실 및 긴급 보전요청 사 유			
긴급 보전요청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b>검 사 지 휘</b>			
○○○ 검찰청			
검 사			인

<b>000검찰청</b>	
진행번호 : 202XX보전XX호 <span style="float: right;">0000. 00. 00.</span>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발 신 : 000검찰청	
제 목 :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검 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형제XXXX호 / 20XX임시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보 전 기 간 연 장 대 상 전 자 정 보	<b>별지 기재와 같음 /</b>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XX일(3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와 같음
법 원 허 가 예 관 한 사 항	0000. 00. 00. △△지방법원 □□□ 판사 연장 허가
비 고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b>※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서 사본 첨부</b>

**【별지】**

**보전기간 연장 대상 전자정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b>000검찰청</b>	
진행번호 : 20XX보전취소XX호 <span style="float: right;">0000. 00. 00.</span>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명)      발 신 :    0000검찰청	
제 목 : <b>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b> 검 사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형제XXXX호(20XX공조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b>000검찰청</b>	
제 0000-0000 호 <span style="float: right;">0000. 00. 00.</span>	
수 신 :    0000경찰서장	
제 목 : <b>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b>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보 전 요 청 신 청 사 건 번 호	제0000-000호
보 전 조 치 결 과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보 전 조 치 미 이 행 전 자 정 보 및 미 조 치 사 유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

<p>○ ○ ○ <b>검찰청</b></p>	
<p>제 0000-0000 호 <span style="float: right;">0000. 00. 00.</span></p> <p>수 신 : ○○○경찰서장</p> <p>제 목 : <b>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b></p>	
<p>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p>	
<p>보 전 기 간 연 장 허 가 신 청 사 건 번 호</p>	<p>제0000-000호</p>
<p>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결 과</p>	<p>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p>
<p>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미 이 행 전 자 정 보 및 미 조 치 사 유</p>	<p>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내용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p> <p>1. ~ 7.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p> <p>1. ~ 7. (생략)</p> <p>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p>
<p>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p> <p>① ~ ④ (생략)</p> <p>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p>	<p>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p> <p>① ~ ④ (생략)</p> <p>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p>

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 2. (생략)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법 제2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보전요청 신청 및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검토한 후,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등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보

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신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전요청,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결정부 또는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신청 또는 건의를 받고,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신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⑤ 검사가 법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46. (생략)

<신설>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46. (현행과 같음)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47. ~ 144. (생략)

47. ~ 144. (현행과 같음)